

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가. 송도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 및 주변 컨벤션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송도 컨벤시아의 임대료 감면 및 할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대료 감면행사 대상 범위를 인천광역시 주최·주관행사에서 송도 컨벤시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(안 제5조)

나. 전시장 임대료 감면 및 할인 범위 확대(안 별표 1)

- 전시장 면적표기에 있어 설계면적(벽 중심선부터의 면적)과 유효면적(기둥이나 벽면 미포함)의 혼란방지를 위해 표기 삭제
- 전시장의 기본관리비(200원/m²)를 기본임대료에 통합하여 징수
- 기간별 차등률 규정을 신설하여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50% 할인(다만, 12월, 1월, 2월, 7월, 8월 행사에 한함)
- 행사개최와 관련한 시설의 장치 및 철거시 1일 4시간을 무료제공 토록 시간외 임대료 조정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인천광역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”를 “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전시장 임대료(제4조제3항 관련)

구 분		임 대 료	비 고
장소별	1층	전시장	1일 1,400원/m ² (08:00~20:00기준 (기본관리비 포함))
		옥외전시장	1일 400원/m ²
할인 할증률	월별 차등률	12월, 1월, 2월	30% 할인
		7월, 8월	40% 할인
	규모별 차등률	전체 사용시	10% 할인
		1개실 중 일부 사용시	20% 할증
기간별 차등률	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(다만, 12월,1월,2월,7월,8월에 한함)	50% 할인	월별, 규모별,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
시간외 임대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(08:00~20:00) 1일 임대료의 10% 가산 다만, 시설장치 및 철거기간 중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(이월사용 불가) ·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. 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임대료 감면) 시장은 <u>인천광역시</u>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임대료 감면) ----- <u>컨벤시아 운</u>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----- ----- -----</p>